

2023년 식품안전정책과 공무원근로자 채용 공고

「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근로자 운영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96호, '22.2.24) 제10조에 따라 식품안전정책과 공무원근로자(사무실무원)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1. 20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1.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

가. 채용인원 : 사무실무원 1명

나. 채용기준

채용분야	근무부서	채용인원	채용자격기준
공무원근로자 (사무실무원)	식품안전 정책과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식품가공학, 식품공학, 식품영양학, 위생학, 화(공)학, 미생물학, 수의학, 축산(가공)학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식품 관련 자격증 소지자 ○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받은 자 ○ 우대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품행정 업무 경험자 - 「장애인복지법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- 전산업무 기능자(한글, 엑셀, 파워포인트, 포토샵 등) - 어학 능력 우수자

다. 수행업무

- 서무, 보안, 물품관리 업무 지원
- 식품위생법령과 관련한 업무 지원
- 국가기술자격, 민간자격 관련 업무 지원
- 국내 경상경비지출 및 기록물관리 업무 지원

라. 우대조건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, 부양의무자, 차상위계층 및 개별가구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
-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(단, 공무원신체검사규정 제5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)

2. 보수 및 근무조건

가. 신분 : “공무원근로자” (공무원이 아닌 근로자)

나. 근무 장소 : 식품의약품안전처

-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

다. 계약기간 : 계약일 ~ '23.12.31(근무실적에 따라 재계약 가능)

라. 근무시간 : 공무원에 준함(09:00~18:00, 주 5일 근무)

마. 보수 : 월 2,010,580원(세금 공제 전 1호봉 기준)

바. 4대보험(국민연금, 고용보험,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), 초과근무 수당 별도 지급

3. 구비서류

가. 응시원서 1부(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서식)

나. 이력서 1부(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서식)

다. 자기소개서 1부(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서식)

라. 주민등록초본 1부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)

마.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

바. 경력증명서, 어학증명서, 자격증사본 등 기타해당 증빙서류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
4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

가. 접수기간 : 2023. 1. 20(금) ~ 1. 31(화) 23:59:59 / 12일간

나. 제출방법 :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(www.mfds.go.kr/employment)을 통하여 온라인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식약처 우수인재 채용시스템(<http://www.mfds.go.kr/employment>) → 채용공고 → 기간제 근로자 원서접수 → 원서접수 등록 → 2023년 식품안전정책과 공무원근로자(사무실무원) 채용 공고 → 지원하기 → '입사지원하기' 작성 후 확인

-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등록용 파일(JPG)이 필요하며,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는 스캔 작업 후 첨부하여야 함

5. 시험방법 및 일정

시험방법	시험(예정)일자	시험장소	합격자 발표 / 장소	비고
서류심사	2023. 2. 2(목)	-	개별(유선문자)통보 * 합격자는 3배수로 제한	
면접시험	2023. 2. 7.(화)	식약처(오송)	개별(유선문자)통보	
최종발표	2023. 2. 8.(수)	-	우수인재채용시스템 공지 및 개별 통보	2023. 2월 중 근무예정

* 1차 서류전형, 2차 면접심사 합격자는 개별 통보하며, 최종합격자는 식약처 우수인재채용 시스템 공지 및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

6. 기타사항

- 가.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다.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,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.

제출된 서류는 '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' 제11조에 따라 처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- 라.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마.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바.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.
- 사.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으며, 중복지원 확인 시 합격 취소 처리되오니,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아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(☎ 043-719-200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